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5. 6. 8.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5. 6. 7. 홍길표 의원 외 5인
- 나. 회부일자 : '95. 6. 7.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5. 6. 8)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길표 의원)****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법률 제 4741호)으로 차기 의회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상임 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95. 5. 6. 서울특별시조례 제3184호)으로 의원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정수를 10인으로 함.(안 제2조제2호)
-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함.(부칙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동조례(안)은 1995. 5. 6 서울특별시 조례 제3184호로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정수가 종전 31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적절히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2대 지방 의원의 경우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정하여집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제2대 구의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하여 타당한 조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5. 토론요지 : 없음****6. 심사결과 : 원안가결****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8. 기타사항 : 없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6
----------	-----

발의일자 : 1995. 6. 7.

발의자 : 홍길표 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법률 제 4741호)으로 차기 의회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95. 5. 6. 서울특별시조례 제3184호)으로 의원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정수를 10인으로 함.(안 제2조제2호)
-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함.(부칙 제2항)

##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부  
칙 제3조

서울특별시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필요성 : 불필요(기 반영되어 있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총무재무위원회 - 10명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  
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  
6조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생략”	제 1 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 2 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총무재무위원회-9명 3. ~ 4. “생략”	제 2 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총무재무위원회-10명 3. ~ 4. “현행과 같음”
제 3 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 3 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현행과 같음”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  
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  
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